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379
----------	------

제출년월일 : 2021년 5월 25일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유니버설디자인이 적용된 도시를 조성하고자 유니버설디자인의 기본이념 및 지침 등에 관한 사항을 보완·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시민’의 정의를 정비하고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지침’의 정의를 추가함(안 제2조).
- 나. 유니버설디자인의 기본이념을 정비함(안 제3조).
- 다. 조례의 적용범위를 정비함(안 제7조).
- 라.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지침의 원칙 및 지침 준수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및 제11조).
- 마.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위원회의 심의사항 정비 및 도시공원위원회가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할 수 있도록 추가함(안 제13조).
- 바. 유니버설디자인센터의 기능을 정비하고 유니버설디자인 사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함(안 제20조 및 제21조).
- 사. 유니버설디자인에 시민의 참여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22조 및 제22조의2).

아.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위원회의 심의대상 및 사업을 규정함(안 별표 1 및 별표 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없음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참조

다.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별도 첨부

2) 입법예고('21. 4. 1.~4. 21.)결과: 의견없음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및 장애의 유무와”를 “또는 장애의 유무 등과”로, “설계하는”을 “계획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관광객을 포함한 시를”을 “일시적으로 시에”로, “사람을 말한다.”를 “사람으로서 이용자와 종사자를 불문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이란 유니버설디자인을 구현함으로써 도시 내 모든 사람이 그 가치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을 말한다.
5.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지침”이란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을 위해 시가 개발하여 배포하는 기준을 말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유니버설디자인은”을 “유니버설디자인은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정보통신기술 등 신기술에 융합 가능한 디자인 적용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및 진

흥·발전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인력, 조직, 재원의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민·전문가 또는 관계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 행정구역 안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공간·시설 등에 적용된다.

1. 「건축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건축물, 같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공공공간 또는 「서울특별시 건축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의 공적공간 등
2. 도로(차도·자전거도·보도) 또는 그 부속시설물 등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및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원시설
4.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시설물등
5. 그 밖에 시 또는 공공기관에서 설치·운영하는 복지시설, 교육시설, 체육시설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제1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제7호를 제8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을 위한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한 때에는 이를 시보와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의2를 삭제한다.

제10조의 제목 “(가이드라인 수립)”을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지침 수립)”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유니버설디자인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이라 한다)을 수립”을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점검표를 배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가이드라인을 수립하는 경우에는”을 “지침은”으로, “사항을 고려”를 “원칙에 따라 수립”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가로, 공원, 시설, 건축물, 그 밖에 일반 시민에게 이용되는 공간 또는 시설 등에 요구되는 실용적이고 통합적인 유니버설디자인의 제시
2. 모든 시민의 접근성, 편리성, 안전성, 쾌적성, 선택 가능성을 높이는 도시 조성을 위한 지침의 제시
3. 모든 시민이 지침을 쉽게 이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 높은 내용 제시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침 외에도 세부유형별 안내서를 제작하여 배포

할 수 있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1조(지침 등의 준수) ① 본청·직속기관 및 사업소 소속부서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별표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할 경우 제10조제1항에 따른 점검표를 작성하여 심의를 주관하는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별표 1에 해당하는 사업이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2회 이상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경우 시장이 정하는 하나의 부서에 제출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센터에서 심의 전 유니버설디자인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점검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1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계획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관련 조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3. 별표 1 유니버설디자인 심의대상 사업의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에 관한 사항
 4. 별표 2 유니버설디자인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유니버설디자인의 인증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사항

제13조제2항 전단 중 “진흥위원회 및”을 “진흥위원회,”로, “건축위원회”를 “건축위원회 또는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제25조에 따른 도시공원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진흥위원회 및 건축위원회”를 “진흥위원회·건축위원회·도시공원위원회”로, “전문가”를 “전문가(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전문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1.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별표 1에 따른 심의대상 중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소관 사항 및 그 밖에 다른 위원회에서 심의하지 않는 사항
2. 건축위원회: 별표 1에 따른 심의대상 중 건축위원회 소관 사항
3. 도시공원위원회: 별표 1에 따른 심의대상 중 도시공원위원회 소관 사항

제1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0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12호를 제5호로 한다.

1. 유니버설디자인 정책의 진흥·발전을 위한 전문적 연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에 준하는 업무
가. 유니버설디자인 정책 및 신사업 발굴

- 나. 지침 수립·고도화 및 유니버설디자인 인증 관련 연구
- 다. 유니버설디자인 현황 또는 실태 조사
- 2. 유니버설디자인 정책의 실행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에 준하는 업무
 - 가. 유니버설디자인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 나. 유니버설디자인의 적용 관련 사업의 기획·실행·지원
 - 다.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자문·모니터링
- 3.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정보 제공·공유
- 4.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교육·홍보·인력양성 및 인식개선

제2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범위 내에서 다양한 인센티브제도를 마련하여 제공”을 “범위에서 인센티브를 부여”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을 위해 유니버설디자인의 개발 또는 적용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법인 또는 단체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시범사업) ①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범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의 추진에 관한 방법, 절차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22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에 관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시민의 의견을 듣거나 시민을 참여시킬 수 있다.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전문가의 참여) ①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의견청취 방법, 위촉 방법, 활동범위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23조 전단 중 “및”을 “또는”으로 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유니버설디자인 심의대상 사업

구분	심의대상	비고
보도	「도로법 시행령」 제2조제1호 내지 2호의 도로 중 보도가 포함된 도로 또는 그 부속물의 신설, 확장, 개량, 보수 등에 관한 사항(단, ‘부속물’의 경우 설치방법 및 배치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소관
공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의 “도시공원” 및 같은 법 제2조제4호의 “공원 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도시공원위원회 소관
건축	’시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이 신축, 증축, 개축, 대수선, 리모델링하는 업무시설, 문화시설, 집회시설, 노유자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관한 사항	건축위원회 소관
교통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제2조제3호가목의 버스터미널·정류소 및 나목부터 마목의 시설(표지판·안내사인 등 그에 부가된 편의시설을 포함한다) 설치에 관한 사항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소관

[별표 2]

유니버설디자인 사업

분 류	세 부 항 목
정보매체	정보 접근성 및 길 찾기에 대한 차별이 없는 다양한 정보매체 디자인
시설물	다양한 시민의 행태와 사용상 편리성과 안전성을 반영한 시설물 디자인
공 간	다양한 시민의 접근성, 이동 연계성 및 편의성이 있는 공간 디자인
지 역	지역단위의 종합적인 유니버설디자인
프로그램	유니버설디자인 인식개선 및 확산을 위한 교육·체험·문화행사 등 프로그램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유니버설디자인”이란 성별, 연령, 국적 및 장애의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설계하는 것을 말한다.</p> <p>2.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이란 유니버설디자인의 구현을 위한 도시의 조성 또는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p> <p>3. “시민”이란 거주지 또는 직장이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위치하거나, <u>관광객을 포함한 시를 방문한 사람 등 시 내에 있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u></p> <p>4. (생략)</p> <p><u><신설></u></p>	<p>제2조(정의) ----- -----.</p> <p>1. ----- ----- 또는 <u>장애의 유무 등과 -----</u> ----- ----- <u>계획하는 -----</u>.</p> <p>2.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이란 유니버설디자인을 구현함으로써 도시 내 모든 사람이 그 가치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을 말한다.</p> <p>3. ----- ----- ----- <u>일시적으로 시에 -----</u> ----- <u>사람으로서 이용자와 종사자를 불문한다</u></p> <p>4. (현행과 같음)</p> <p>5.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지침”이란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을 위해 시가 개발하여 배포하는 기준을 말한다.</p>
<p>제3조(기본이념) 유니버설디자인은 다음 각 호의 기본이념을 충</p>	<p>제3조(기본이념) 유니버설디자인은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p>

족하여야 한다.

1. ~ 6. (생략)

<신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조성을 위하여 시민과 협력하여 유니버설디자인의 도입과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의 저변확대를 위한 시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이행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평가 및 제도개선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키고 민간 확산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 시책을 총괄 조정·시행할 수 있는 인력과 조직, 재원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내용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하고,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

해 -----.

1. ~ 6. (현행과 같음)

7. 정보통신기술 등 신기술에 융합 가능한 디자인 적용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및 진흥·발전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인력, 조직, 재원의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민·전문가 또는 관계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시는 건축, 도시, 교통, 공원 등에 관한 각종 위원회를 운영할 때 필요시 유니버설디자인 전문가 또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7조(적용범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물에 대하여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건축기본법」 제3조제3호의 공공공간
2. 「서울특별시 건축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의 공적공간
3.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8조제1항제4호의 시설물 및 디자인 사업
4.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7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심의대상
5. 「서울특별시 경관 조례」 제2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총공사비 5억 원 이상인 시 또는 공공기관에서 건축하는 건축물

제7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 행정구역 안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공간·시설 등에 적용된다.

1. 「건축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건축물, 같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공공공간 또는 「서울특별시 건축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의 공적공간 등
2. 도로(차도·자전거도로·보도) 또는 그 부속시설물 등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및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원시설
4.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시설물등
5. 그 밖에 시 또는 공공기관에

<신 설>

제9조의2(시범사업 시행)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범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10조(가이드라인 수립) ①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적용 및 관리를 위하여 기본계획의 내용을 반영한 유니버설디자인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가이드라인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횡단보도에 접속하는 보도와 차도 경계구간의 턱을 제거(높낮이차가 전혀 없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다.
2.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통로의 턱을 제거하되, 불가피한 경우 경사로 등을 설치한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한 때에는 이를 시보와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삭 제>

제10조(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지침 수립) ① -----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점검표를 배포-----
-----.

② 지침은 ----- 원칙에 따라 수립-----.

1. 가로, 공원, 시설, 건축물, 그 밖에 일반 시민에게 이용되는 공간 또는 시설 등에 요구되는 실용적이고 통합적인 유니버설디자인의 제시
2. 모든 시민의 접근성, 편리성, 안전성, 쾌적성, 선택 가능성을 높이는 도시 조성을 위한 지침의 제시

3. 장애인화장실의 최소면적은 4m²이상으로 한다.

4. 보도의 횡경사는 1/24이하로 한다.

5. 보도의 공적 영역이 사적영역에 의하여 침해받지 않도록 한다.

<신 설>

제11조(가이드라인 등의 적용) ①

가이드라인은 제7조의 적용범위에 우선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7조의 적용범위 중 의무적용 시설 및 건축물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3항에 따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 시설은 제외한다.

③ 구청장이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시로부터 예산을 지원받는 공공시설 및 공공공간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

3. 모든 시민이 지침을 쉽게 이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 높은 내용 제시

<삭 제>

<삭 제>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침 외에도 세부유형별 안내서를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제11조(지침 등의 준수) ①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소속부서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별표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할 경우 제10조제1항에 따른 점검표를 작성하여 심의를 주관하는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별표 1에 해당하는 사업이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2회 이상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경우 시장이 정하는 하나의 부서에 제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센터에서 심의 전 유니버설디자인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점검표를 제출한

의2에 따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득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 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기능을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것으로 본다.

제13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 도시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계획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관련 조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3. 별표 1 유니버설디자인 심의 대상 사업의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에 관한 사항
4. 별표 2 유니버설디자인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유니버설디자인의 인증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

제8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및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5조에 따른 건축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및 건축위원회에 시장이 정하는 수 이상의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전문가를 참석시켜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운영한다.

1.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 공공시설물 등의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제7조 제1호 및 제3호

2. 건축위원회 : 건축물의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제7조제2호 및 제4호, 제5호

<신 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한다.

----- 진흥위원회, -----

----- 건축위원회 또는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제25조에 따른 도시공원위원회----. ---- 진흥위원회·건축위원회·도시공원위원회---- 전문가(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전문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③ -----

--.

1.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별표 1에 따른 심의대상 중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소관 사항 및 그 밖에 다른 위원회에서 심의하지 않는 사항

2. 건축위원회: 별표 1에 따른 심의대상 중 건축위원회 소관 사항

3. 도시공원위원회: 별표 1에 따른 심의대상 중 도시공원위원회 소관 사항

<삭 제>

1.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관련 조례 및 규칙 등의 제·개정
에 관한 사항
4. 제3항에 따른 위원회에서 운영
하는 대상
5. 유니버설디자인 인증에 관한
사항
6. 유니버설디자인 도입 민간시
설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7. 유니버설디자인 도입에 필요
한 학술적 조사 연구 및 정보
수집 등에 관한 사항
8. 유니버설디자인센터 운영 등
에 관한 사항
9.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활
성화 및 계획 추진에 관한 사
항
10.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여자의 선정 및 시상 등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유니버설디자인 도
시조성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제14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② (생략)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장애인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한다. <단서 신설>

1. ~ 4. (생략)

④ (생략)

제20조(유니버설디자인센터 설치·운영 등) ① (생략)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유니버설디자인 사업을 위한 육성방안 및 정책 발굴을 위한 전문적 연구

제14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단,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 4.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제20조(유니버설디자인센터 설치·운영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유니버설디자인 정책의 진흥·발전을 위한 전문적 연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에 준하는 업무

가. 유니버설디자인 정책 및 신사업 발굴

나. 지침 수립·고도화 및 유니버설디자인 인증 관련 연구

다. 유니버설디자인 현황 또는 실태 조사

2.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공유 네트워크 기반
구축

3.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는
신사업 발굴 및 정책적 지원
을 위한 컨설팅

4.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장애물 없
는 생활환경 인증을 위한 지
원 및 컨설팅

5. 가이드라인 마련 및 소식지
발간

6. 유니버설디자인 인증에 관한
사무

7.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현황
및 실태조사

8.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인력의
발굴 및 전문가 육성

2. 유니버설디자인 정책의 실행
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에 준하는 업무

가. 유니버설디자인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나. 유니버설디자인의 적용
관련 사업의 기획·실행·지
원

다.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자문·모니터링

3.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정보
제공·공유

4.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교육·
홍보·인력양성 및 인식개선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9. 유니버설디자인 체험관 운영
및 프로그램 개발

<삭 제>

10.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한
상품, 제품, 소프트웨어 등 기
술개발

<삭 제>

11.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홍
보 및 교육

<삭 제>

12. (생 략)

5. (현행 제12호와 같음)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21조(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의 지원 등) ① 시장은 공공시
설 외의 시설을 설치하고 관리
하는 자가 제10조에 따른 가이
드라인을 적용하여 신규 시설물
의 설치, 신축 및 증·개축, 용
도변경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
는 유니버설디자인 위원회의 심
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가
이드라인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의 지원 등) ① 시장은 유니버
설디자인 도시조성을 위해 유니
버설디자인의 개발 또는 적용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
는 단체에 대해 업무수행에 필
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 도시
조성을 촉진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양한 인센티브제
도를 마련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② -----

범위에서 인센티브를 부여----
-----.

<신 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
는 법인 또는 단체는 사업계획
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비용 지

<신 설>

제22조(시민참여)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을 함에 있어 시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시민참여단을 모집하고 시민제안 공모대회, 사례발표회, 사전전시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신 설>

제23조(관계기관의 협력 등)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의

원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1조의2(시범사업) ①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범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의 추진에 관한 방법, 절차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22조(시민참여)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에 관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시민의 의견을 듣거나 시민을 참여시킬 수 있다.

제22조의2(전문가의 참여) ①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의견청취 방법, 위촉 방법, 활동범위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23조(관계기관의 협력 등) -----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학·연구소 등 학술기관
및 관계기관과 협력할 수 있으
며, 이 경우 예산 및 행정적 지
원을 할 수 있다.

또는 -----

-----.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조례 일부개정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의원·위원회·시장·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 개정은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유니버설 디자인의 기본이념 및 지침 등 용어의 정의 추가, 조항별 의미 명확화,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위원회 심의사항 정비를 주된 내용으로 하므로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 상승 요인은 없음
- 유니버설디자인 적용범위(제7조)에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이 추가되었으나, 기존에 관련부서에서 법령에 근거하여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이므로 추가 비용 발생은 없으며,
- 유니버설디자인 사업에 대한 지원근거(제21조) 개정 역시 기존 조항의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한 것에 불과하여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없으며, 이와 관련하여 실제로 추진되었거나 추진 예정인 사업도 없음
- 제11조(지침 등의 준수) 조항의 경우 공공부문의 유니버설디자인의 적용 강화를 위하여 공공건축물 등 건립추진 담당부서의 절차적 역할에 대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 등으로 규정되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

4. 작성자

- 서울특별시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 이효진(☎ 02-2133-2727)